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0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4.

발 의 자: 박성훈·김종양·고동진

임이자 · 김도읍 · 이인선

이헌승 · 이달희 · 박충권

김성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·절차, 업무 범위, 신청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을 총리령과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.

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검사결과의 기록·보관·제출 등 의무사항과 출입·조사 등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, 침익적 행정처분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를 법률에 열거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64조제7항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7항을 제1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2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·절차 등"을 "절차, 제6항에 따른 재지 정 기준·절차 및 제9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·출입·점검·조사 등"으로 한다.

- ①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,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⑧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업무 범위, 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등 총 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그 업무에 관한 사 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 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⑩ 안전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보고 · 자료제

- 출·출입·점검 및 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.
- ① 제9항에 따라 출입·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6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64조제7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·보관 및 결과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
- 5. 제6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6. 제64조제9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
- 7. 제64조제9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·점검·조사를 거부·방 해 또는 기피한 경우
- 8. 제64조제1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	제64조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
등) ① ~ ⑥ (생 략)	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
	안전성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조사
	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
	성하여 보관하고, 그 결과를 식
	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
	<u> 여야 한다.</u>
<u> <신 설></u>	⑧ 안전성검사기관은 검사 업무
	범위, 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등
	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
	<u>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
	성검사기관의 관리 · 감독을 위
	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
	는 안전성검사기관에 그 업무에
	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
	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
	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
	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
	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⑩ 안전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

<신 설>

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·절차, 업무 범위, 제3항에 따른 변경의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65조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다만,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거부・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. ① 제9항에 따라 출입·점검 또 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 (12) -----절차,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 ·절차 및 제9항에 따른 보고· 자료제출・출입・점검・조사 등-----. 제65조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 소 등) ① -----1. ~ 3. (현행과 같음)

유 없이 제9항에 따른 보고 · 자

료제출・출입・점검 및 조사를

 4.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

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

 반한 경우

<신 설>

<u><신</u>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- 4. 제64조제7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·보관 및 결과제출을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 우
 - 5. 제6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 항을 위반한 경우
 - 6. 제64조제9항에 따른 보고 또 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한 경우
 - 7. 제64조제9항에 따른 관계 공

 무원의 출입·점검·조사를

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 - 8. 제64조제12항에 따른 지정 기 준에 미달한 경우
 - ② (현행과 같음)